

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04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8. 18.
제출자 권민찬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8월 18일 권민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인용조문 변경.(안 제1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)
- 제5조제1항제1호중 “김포시 본청”을 “김포시”로 한다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 「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상의 불부합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